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35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정을호 · 최혁진 · 백승아
차지호 · 신영대 · 김영배
문정복 · 박수현 · 이기현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 · 운영되어 온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

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조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정책”을 “교육정책(「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원으로서”를 “교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교원”을 “교원 및 영유아보육교사”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의”를 “위원장과 위원의”로, “연임할”을 “중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를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을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 ①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수립·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을 “교육·영유아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위원회의”를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영유아보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영유아보육 또는 교육·영유아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력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영유아보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자문 등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기한을”을 “교육의제와 기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특별위원회의”를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로 한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영유아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19조의 제목 “(전문위원)”을 “(연구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위원을”을 “연구전문위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위원은”을 “연구전문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위원의”를 “연구전문위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19조에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구전문위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 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u>교육정책</u> 에 대 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 ----- ----- ----- <u>교육정책</u>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 육정책을 포함한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 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 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② ----- ----- ----- ----- ----- ----- ----- -----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 6. (생략)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교육부차관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생략)

-----.

1. -----

-----교원 또는 어
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사로서

2. ~ 6.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교원
및 영유아보육교사-----
-----3명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략) ④ ~ ⑧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u> 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u>연임할</u> 수 있다. ② <u>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u>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u>임</u> 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u>계산한다.</u>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u>교육비전, 중</u> <u>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u> <u>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u> <u>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u> <u>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u> <u>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u> <u>한 사항</u> 2.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장과</u> <u>위원의</u>----- -----<u>중임할</u>-----. ② ----- ----- -----<u>임</u>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u>으로 한다.</u>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 ----- -----. 1. -----<u>국가교육발전</u> <u>계획 수립 등에</u>----- 2.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2에 따른 <u>교육현안</u> <u>에 대한 조사·검토에 관한</u> <u>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신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생략)

<신설>

등) ①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검토) ①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수립·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포함하여 6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영유아보육-----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영유아보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u><신 설></u> <u><신 설></u> ③ <u>전문위원회의</u>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3. <u>교육·영유아보육 또는 교육·영유아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4. <u>교육·영유아보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5. <u>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u> ⑤ <u>전문위원회</u>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u> ⑥ <u>전문위원회는 자문 등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⑦ <u>그 밖에 전문위원회의</u>----- ----- -----. 제18조(특별위원회) ① -----
---	--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
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
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
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
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
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
육의제와 기한을-----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
영유아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아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제19조(연구전문위원) ① -----

-----연구전문위원을-----

② -----연구전문위원
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그 밖에 <u>전문위원의</u>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연구전문위원의</u> ----- ----- -----.